|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및**  **연기납부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京社保发〔2020〕2号  각 구 사회보험기금(사업)관리센터,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보장센터, 각 사회보험취급기구, 각 사회보험가입단위 :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人社部发〔2020〕11号) 등 문건을 관철하기 위해, <북경시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통지>(京人社养字〔2020〕29号)에 따라 기업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하 3가지 사회보험이라 함)의 한시적 감면과 연기납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적용대상과 기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대형기업, 민간 非기업단위, 사회단체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납부분을 반감 징수한다. 즉, 양로보험 단위 납부비율을 16%에서 8%로 조정하고 실업보험 단위 납부비율을 08%에서 0.4%로 조정하며, 산재보험 단위 납부비율을 현행 비율의 50%로 계산한다.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중소영세기업(단위 형식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납부비율에 따르는 개인공상업자 포함)과 기타 특수유형(类型) 단위의 3가지 사회보험 단위 납부분을 면제한다.  상술한 사회보험료 반감징수 혹은 면제 대상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신청을 제출할 필요 없이 3월 9일부터 북경시 사회보험온라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감면정책 적용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가입단위 유형(类型)구분 관련  <중소기업 유형(类型)기준 규정을 인쇄 발부하는 것에 대한 통지>(工信部联企业〔2011〕300号)와 《<통계분야 대중소영세기업 구분방법(2017)>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国统字〔2017〕213号) 등 규정에 따라 기업은 유형(类型) 구분 신청을 제출할 필요 없으며, 직접 통계와 세무 데이터에 의거하여 기업유형(类型)을 구분한다.  기업은 3월 9일부터 북경시 사회보험온라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기업유형(类型)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업유형(类型)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말 전에 소재 구 사회보험취급기구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함과 아울러 2019년 본단위 종업원 수, 영업수입, 자산총액, 2019년 12월 실제 종업원 수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대조 확인한다. 원칙상 기업유형(类型)은 일단 확정되었다면 정책 집행기간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3. 연기납부 처리 관련  (1) 연기납부 신청 조건  방역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심각한 곤란이 생긴 사회보험가입단위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업단위 포함)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방역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심각한 곤란이 존재하며, 최근 1개월의 영업(재무) 수입이 2019년 4분기 월 평균 영업(재무) 수입에 비해 50% 이상 (기업단위 데이터는 세무부서에 보고한 데이터에 준하며, 기타 유형의 단위는 재무제표의 데이터에 준함) 하락하였음을 확인 및 약속 2. 사회보험가입단위가 사회보험 엄중한 신용상실 명단 혹은 신용상실 연합징계 명단에 미 편입 3.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연기납부 기간 만료 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 및 보증 4.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법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 납부분 원천공제 의무를 이행하며, 종업원과 협상일치를 거쳐 원천공제 개인 납부분도 연기 납부하는 경우 연기기간의 기업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 납부부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연기납부 기한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월별로 납부하는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기한은 원칙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연기납부 집행기한은 2020년 12월 20일을 마감으로 한다. 연기납부 기간에는 체납금을 면제한다.  북경시는 사회보험료 “당월 신고, 익월 징수” 방식을 취한다. 사회보험가입단위의 2월달 사회보험료는 3월말전에 납부해야 하며, 3월에 연기납부를 신청한 후에는 8월말전에 납부해야 하며, 기타 월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아래 표를 참조). 연기납부 집행기간의 요구에 따라 사회보험가입단위는 6월부터 11월의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를 늦어도 2020년 12월 20일전에는 납부해야 한다.   |  |  |  | | --- | --- | --- | | 사회보험료 발생 월(月) | 종전 납부기한 | 마지막 납부기한 | | 2월 | 3월말 | 8월말 | | 3월 | 4월말 | 9월말 | | 4월 | 5월말 | 10월말 | | 5월 | 6월말 | 11월말 | | 6월 | 7월말 | 12월 20일 | | 7월 | 8월말 | 12월 20일 | | 8월 | 9월말 | 12월 20일 | | 9월 | 10월말 | 12월 20일 | | 10월 | 11월말 | 12월 20일 | | 11월 | 12월 20일 | 12월 20일 |   북경시 2020년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기한표  (3) 연기납부 신청절차   1. 연기납부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규정한 기한 내에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 “북경인사(人社)” APP 및 위챗공중호를 통해 연기난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가입단위에서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 시에는 최근 1개월 영업(재무) 수입과 2019년 4분기 월 평균 영업(재무)수입 데이터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신의 성실을 지켜야 하며, 조사 확인을 거쳐 허위데이터 자료로 연기납부 자격을 사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연기납부 자격을 취소하며, 아울러 <사회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3.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연기납부 협의서>를 열람 및 동의하고 동 협의서상 약속에 따라 집행함을 수락하면 연기납부 신청이 제출된 것으로 된다.   (4) 연기납부 신청 업무  최초 연기납부 신청은 2020년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리하고 4월부터 11월간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연기납부 신청을 수리하며, 심사결과는 당월 수리기간이 완료된 후 5일 내에 문자형식으로 고지한다. 심사에 통과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당월에 효력을 발생하며, 아울러 신청은 1회 제출하면 되고 매월 신청은 필요 없다. 종전의 납부기간 당월 및 그 후 매월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는 <북경시 2020년 3가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기한표>의 상응하는 월 “마지막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당월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신청은 불가하다.  (5) 이미 연기 납부를 적용(신청)한 사회보험료의 처리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단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료를 자동 공제후 환급한 단위 포함)는 1월달 사회보험료를 7월말전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전에 이미 2월달 사회보험료를 3월달말까지 연기 납부하고자 신청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2월달 사회보험료를 8월말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가입단위의 2월달 사회보험료는 자동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3월 및 그 이후의 사회보험료를 계속 연기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조건,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연기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에 통과된 후 규정에 따라 연기 납부할 수 있다.  관광, 숙박, 요식, 전시회, 상업무역유통, 교통운수, 교육훈련, 문예공연, 영화와 텔레비전 및 극장, 빙설운동 등 10가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이미 7월말까지 사회보험료 연기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체 상황에 근거하여 이 통지에서 규정한 조건, 절차 및 기한에 따라 다시 연기납부를 신청하며, 업종 주관부서의 확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6) 연기납부 및 보완납부 종료   1.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연기납부 기간에 자체의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한 사회보험료를 앞당겨 납부할 수 있으며, 늦어도 규정한 기한내에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를 납부 완료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기납부 기일 만료일부터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수취하며, 사회보험가입단위 및 관련 직원은 엄중한 사회보험 신용상실명단에 편입시키고 신용상실 연합징계를 실시한다. 2. 은행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북경시 사회보험온라인서비스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사회보험료 연기납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월별 보완납부” 모듈을 선택하여 의무납부 사회보험료 명세를 조회 후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할 수 있다.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은행 당일의 금액공제(批量扣款), 인터넷뱅킹, 은행 카운터를 통해 연기납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데이터는 당일 유효하며, 당일 납부가 성공되지 못한 경우 다음날에 연기납부 데이터를 다시 제출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은행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나 당분간에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납부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회보험가입단위, 그리고 사회보험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는 팩스, 메일 등 방법을 통해 소재 구 취급기구에 사회보험료 납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방역 안배에 따라 소재 구 사회보험취급기구와 협상하여 납부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단 현금 납부는 금지한다.   4. 감면 및 연기납부 기간의 사회보험 업무처리  (1) 사회보험료 감면 및 연기납부 기간에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제반 사회보험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월별로 본 단위 사회보험가입 수 증감변동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2) 연기납부 기간에 기본양로금 수령, 성(省)간 이전연결 수속처리, 실업보험금 수령, 사망청산 등 계좌 청산업무가 필요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개별적으로 종업원의 납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3）규정한 기한 내에 연기납부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월별로 정상 업부절차에 따라 3가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은행의 매일 금액공제(批量扣款), 인터넷뱅킹, 은행카운터 방식으로 3가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상술한 3가지 납부 방식 중에서 은행의 매일 금액공제 마감시간은 매월 마지막 두번째 자연일로 하며 인터넷뱅킹, 은행 카운터의 매일 구체적 개방시간, 마감시간은 은행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사회보험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먼저 위탁수금 방식으로 3가지 사호보험료를 납부하며,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방역 안배에 따라 소재 구 사회보험취급기구와 협상하여 납부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단 현금 납부는 금지한다.  5. 기타 사회보험가입단위(개인)에 대한 요구  국가 정책에 따라 3가지 사회보험 단위 납부분 감면대상 단위 혹은 개인에는 본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관과 사업단위, 개인의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공상업자와 탄력적 취업인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술한 3가지 종류 단위(개인)의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는 정상 업무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그중, 춘절 연휴조정과 방역 영향으로 인해 1월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탄력적 취업인원 (사회보험 보조를 받는 탄력적 취업인원 포함)은 신청할 필요 없이 모두 3월말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기간 사회보험료 납부실패가 발생하여 납부기록이 중단된 인원은 보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중단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통지는 발부일로부터 집행한다.  북경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20년 3월 8일 |  | **关于阶段性减免三项社会保险**  **费和办理缓缴有关事项的通知**  京社保发〔2020〕2号  各区社会保险基金（事业）管理中心、北京经济技术开发区社会保险保障中心、各社会保险代办机构、各参保单位：  为贯彻落实《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人社部发〔2020〕11号）等文件精神，按照《关于印发关于做好北京市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工作的通知》（京人社养字〔2020〕29号），现就阶段性减免企业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工伤保险（以下简称三项社会保险）和办理缓缴等有关事项通知如下：  一、阶段性减免三项社会保险费的适用对象和时限  2020年2月至4月，减半征收大型企业、民办非企业单位、社会团体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即养老保险单位缴费比例由16%调整为8%；失业保险单位缴费比例由0.8%调整为0.4%；工伤保险单位缴费按照现行费率的50%计算。  2020年2月至6月，免征中小微企业（包括以单位形式参保按照企业缴费比例的个体工商户）和其他特殊类型单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  符合上述减半征收或免征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无需提交申请，可自3月9日起通过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查询适用减免政策情况。  二、关于参保单位划型  根据《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工信部联企业〔2011〕300号）和《关于印发<统计上大中小微型企业划分办法(2017)>的通知》(国统字〔2017〕213号)等规定，无需企业提交划型申请，直接以统计和税务数据为依据进行企业划型。  企业可自3月9日起通过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查询划型结果，对划型结果有异议的，应在3月底前向所属区社保经办机构提出变更申请，同时提交2019年本单位从业人数、营业收入、资产总额、2019年12月实际从业人数等材料，按规定进行复核确认。原则上，企业类型一旦划定，政策执行期间不做变动。  三、关于缓缴处理  （一）申请缓缴条件  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参保单位（含参加企业基本养老保险的事业单位），符合以下条件的，可按有关规定对应缴三项社会保险费申请缓缴。  1.参保单位确认并承诺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最近一月营业（财务）收入与2019年4季度月均营业（财务）收入相比下降50%以上(企业单位数据按照上报税务部门口径，其他类型单位数据按照会计报表口径)。  2.参保单位未被列入社会保险严重失信人名单或失信联合惩戒。  3.参保单位承诺并确保于缓缴期满前及时缴费。  4.参保单位依法履行按月代扣代缴职工个人缴费的义务;与职工协商一致，可以同时缓缴代扣代缴个人缴费部分的，缓缴期间的企业基本养老保险个人账户应缴费额不计息。  （二）缓缴期限  参保单位每月应缴的三项社保费缓缴期限原则上不超过6个月，缓缴执行期截至2020年12月20日。缓缴期间免收滞纳金。  我市社会保险费实行“当月申报、次月收缴”的模式。参保单位2月份社会保险费，应当于3月底前缴纳，3月申请缓缴后，应于8月底前缴纳，以此类推（参见下表）。根据缓缴执行期要求，6月至11月的应缴社保费，参保单位最迟应于2020年12月20日前缴清。   |  |  |  | | --- | --- | --- | | 费款所属期 | 原缴费期限 | 最迟缴费期限 | | 2月 | 3 月底 | 8 月底 | | 3 月 | 4 月底 | 9 月底 | | 4 月 | 5 月底 | 10 月底 | | 5 月 | 6 月底 | 11 月底 | | 6 月 | 7 月底 | 12月20日 | | 7 月 | 8 月底 | 12月20日 | | 8 月 | 9 月底 | 12月20日 | | 9 月 | 10 月底 | 12月20日 | | 10 月 | 11 月底 | 12月20日 | | 11 月 | 12月20日 | 12月20日 |   北京市缓缴2020年三项社会保险费期限表  （三）缓缴申请流程  1.符合申请缓缴条件的参保单位，可在规定时间内登录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北京人社”APP和微信公众号提交缓缴申请。  2.参保单位在提交缓缴申请时，要如实填报最近一月营业（财务）收入与2019年4季度月均营业（财务）收入数据。参保单位应恪守诚信，如经查实使用虚假数据材料骗取缓缴资格，将取消缓缴资格，并按《社会保险法》等有关法规严肃处理。  3.阅读并同意《阶段性缓缴三项社会保险费协议》，承诺依据该协议约定执行，即完成提交缓缴申请。  （四）缓缴申请安排  首次受理缓缴申请安排在2020年3月9日至14日；4月至11月期间每月1日至5日安排受理缓缴申请。审核结果于当月受理期结束后5日内以短信形式告知。审核通过的参保单位，当月生效，且只需申请一次,无须每月申请，原缴费期限在申请当月及以后的每月应缴费款，均可在《北京市缓缴2020年三项社会保险费期限表》相应月份“最迟缴纳时间”前缴纳。  申请缓缴时，不得申请当月之前的应缴社会保险费。  （五）已享受(申请)延长缴纳社会保险费的处理  未缴纳2020年1月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包括未按时缴费、自动扣款后退费的单位），1月社会保险费可延长至7月底前缴纳。  此前，已申请将2月社会保险费延长至3月底缴纳的参保单位，2月社会保险费可延长至8月底前缴纳。  以上参保单位，其2月社会保险费不予自动扣缴，但如需继续缓缴3月及以后月份社会保险费，须按规定条件、流程和时限申请缓缴，经审核通过后，按规定缓缴。  旅游、住宿、餐饮、会展、商贸流通、交通运输、教育培训、文艺演出、影视剧院、冰雪体育等十类行业企业，已申请延长缴纳社会保险费至7月底的，根据自身情况，须按本通知规定条件、流程和时限重新申请缓缴，不再需要行业主管部门确认。  （六）结束缓缴和补缴  1.参保单位在缓缴期间，可根据自身情况，提前缴纳已申请缓缴的社保费，最迟应在规定的期限内缴清应缴的社保费。逾期不缴的，从缓缴期满之日起，按规定加收滞纳金，参保单位及相关经办人员列入社会保险严重失信人名单，同时实施失信联合惩戒。  2.使用银行缴费途径缴纳社保费的参保单位，可通过登录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申报缴纳缓缴的社保费,选择“月报补缴”模块，通过系统查询应缴社保费的明细，确认无误后提交。参保单位可通过银行当天的批量扣款、银行网银、银行柜台缴纳缓缴的社保费。缴费数据当天有效;当天缴费不成功，次日需重新提交缓缴缴费数据并完成缴费。  3.使用银行缴费途径但暂无法通过网上申报提交缴费确认信息的参保单位，以及使用社保缴费途径缴纳社保费的参保单位，可通过传真、邮件等途径向所属区经办机构提交缴费申请；参保单位可根据疫情防控安排，与所属区社保经办机构联系协商确定缴费方式，但禁止现金缴费。  四、减免和缓缴期间的社保业务办理  （一）在减免和缓缴社保费期间，参保单位应正常办理各项社保业务，应根据规定继续按月申报本单位参保人数增减变化情况。  （二）缓缴期间，如遇有领取基本养老金、办理跨省转移接续、申领失业金、死亡清算等涉及账户清算业务的职工，参保单位需要单独为职工办理缴费手续。  （三）未在规定时间内提出缓缴申请的参保单位，每月按照正常的业务流程征收三项社保费：  使用银行缴费途径缴纳社保费的参保单位，可通过银行每天的批量扣款、银行网银、银行柜台方式完成三项社会保险费的缴费工作。上述三种缴费方式中，银行每天的批量扣款截止时间为每月倒数第二个自然日，银行网银、银行柜面每天具体开放时间、截止时间依据银行规定执行。  使用社保缴费途径缴纳社保费的参保单位，首先使用委托收款方式进行三项社会保险费的批量收款；批量收款不成功的，参保单位可根据疫情防控安排，与所属区社保经办机构联系协商确定缴费方式，但禁止现金缴费。  五、其他参保单位(个人)有关要求  按照国家政策, 减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的单位或人员不包括本市参保的机关事业单位、以个人身份参保的个体工商户和灵活就业人员。  上述三类单位（人员）其应缴社保费将按照正常的业务流程进行扣缴。其中,因春节假期调整和疫情影响，未成功扣缴1月社保费的灵活就业人员（包含享受社会保险补贴的灵活就业人员），无须申请，均可以延长至3月底缴费。2019年12月至2020年2月期间出现因缴费不成功导致缴费中断的人员，可以补缴，不视为断缴。  本通知从下发之日起执行。  北京市社会保险基金管理中心  2020年3月8日 |